

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수칙

2019.01.01.



미세먼지(황사)로 인한 옥외작업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수칙

2018.11.28.(수) 대전 동부권역 등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미세먼지 특보가 발령되었고, 내년 봄까지 수시로 미세먼지(황사)로 인한 특보가 발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

경보발령 기준 및 확인방법

구분	기준	확인방법
미세먼지*	PM ₁₀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 ₁₀ 시간평균 농도가 300 $\mu\text{g}/\text{m}^3$ 이상 2시간 지속일 때	환경부 에어코리아 (http://www.airkorea.or.kr)
	PM _{2.5}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 _{2.5} 시간평균 농도가 150 $\mu\text{g}/\text{m}^3$ 이상 2시간 지속일 때	
황사	황사로 인해 1시간 평균 미세먼지(PM ₁₀) 농도가 800 $\mu\text{g}/\text{m}^3$ 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	기상청 날씨누리 (http://www.weather.go.kr)

* 미세먼지 : 석탄, 석유 등의 화석연료가 연소될 때 또는 제조업·자동차 매연 등의 배출 가스에서 발생하는 입자크기가 매우 작은 먼지이며, 지름이 10 μm 보다 작으면 PM₁₀, 지름이 2.5 μm 보다 작으면 PM_{2.5}로 분류됩니다.

※ 환경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「우리동네 대기정보」 로도 확인 가능합니다

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

미세먼지(황사) 경보발령 지역에서의 옥외작업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05조 및 별표 16에 따른 분진작업이므로, 제614조 및 제617조에 따라 사업주는 작업자에게 호흡용 보호구 지급 및 유해성 주지 등 건강장해 예방조치를 하여야 합니다.

관련 질환 및 증상

■ 호흡기 질환

기관지염, 천식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, 기침, 가래,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동반합니다.

■ 호흡기 외 질환

알레르기 결막염, 아토피 피부염, 심혈관계질환, 알레르기성 비염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, 가려움증, 충혈, 통증, 피부건조증, 피부병변 등의 증상을 동반합니다.

건강장해 예방수칙

■ 작업 및 장소관리

- 출입문, 창문 등을 닫아 미세먼지(황사)의 유입을 차단하고, 현장에 쌓인 먼지 등이 다시 부유하지 않도록 물을 뿌려주세요.
- 휴게시설과 깨끗한 음료를 제공하고 충분히 섭취하도록 하세요.

■ 작업자 관리

- 옥외 작업시간을 최소화하고, 적절한 휴식시간을 부여하세요.
- 손을 자주 씻고 지저분한 손으로 얼굴을 만지지 않도록 하세요.
- 미세먼지(황사)에 노출된 작업복은 충분히 세척하세요.
- 호흡기 및 심장질환자 등은 옥외작업에서 가급적 배제하세요.
- 미세먼지(황사)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긴 작업복과 보안경, 마스크* 등을 착용하세요.

* 식약처 인증(KF80 이상) 보건용 마스크 또는 안전보건공단 인증(2급 이상) 방진마스크

※ 호흡기 및 심장질환자 등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착용하세요